

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558
- 발 의 자 : 이정인 의원(찬성자 15명)
- 발 의 일 : 2019년 3월 29일
- 회 부 일 : 2019년 4월 3일

2. 제안이유

- 조례의 제명 및 내용 중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개정하고, 「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」가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로 전부개정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함(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).
- 나. 「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를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로 함(안 제8조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, 「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입법예고 (2019. 4. 8. ~ 2019. 4. 15) 결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 의견

가. 조례 개정 취지 검토

-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및 내용 중 ‘웹접근성’을 ‘정보접근성’으로 개정하고(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), 관련조례가 전부개정(「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」 ⇒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)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).

<개정조례안 정비 사항>

| 조문 | 현 행 | 개정안 | 비 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명 | 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 | 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 | - 상위 법령(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) 반영 |
| 제1조 | -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| -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| |
| 제2조~ 제11조 | - 웹접근성 | - 정보접근성 | - 상위 법령(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) 반영 |
| 제8조 제1항 | -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 | → - 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 | - 위원회 명칭 변경 |
| 제8조 제2항 | - 「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」 | -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 | - 기존 근거 조례 변경 사항 반영 |
| 제8조 제2항 | - 정보화전략위원회 | - 스마트도시위원회 | |
| 제8조 제2항 | -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 | - 정보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스마트도시위원회 | - 정보접근성 전문가 추가 |
| 제8조 제2항 | -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 | - 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 | - 위원회 명칭 변경 |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(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2조제1항)의 개정¹⁾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등이 장애인·고령인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 수단을 인터넷에서 정보통신망으로 확대하고, 접근대상을 ‘웹사이트’에서 ‘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확대함으로써 웹접근성이라는 용어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²⁾까지 포함하지 못하므로

1) 법률 제15369호, 일부개정 2018.2.21., 시행 2019.2.22.

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성까지 포함되는 ‘정보접근성’이라는 광의의 의미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.



- ※ ‘웹접근성’이란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(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)
- ※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서는 ‘정보접근성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. 다만, 「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」³⁾ 제2조제1호에서 ‘정보 접근’이란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신체 및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 없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고, 2018년도 부처별 정보격차 해소사업 시행계획 주요내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, 고령자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접근성 표준화 및 조사연구, 웹사이트·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실태조사, 웹 접근성 개선 지원 및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등을 정보접근성 제고 사업내용을 통틀어서 “정보접근성 제고”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.⁴⁾

2) “소프트웨어 접근성”이란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으로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쉽게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.)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(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 제1항).

3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-7호, 타법개정·시행 2017. 8. 24.

4) 김유향·김나정, 「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」, 입법·정책보고서 제10호, 국회입법조사처, 2018년 11월, 17면 참조.

-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장애인·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모바일앱 사용 등에 있어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등에서 정보격차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,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나. 세부 내용 검토

1) ‘웹접근성’에서 ‘정보접근성’으로의 범위 확대(조례 제명 및 안 제2조 ~ 안 제11조)

- 본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현행 조례(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)로 제정 및 운영해 왔으며,

- 금번 개정 조례안의 제명변경은 상위법령(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)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접근성까지 포함하는 ‘정보접근성’이라는 광의의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※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1조⁵⁾와 제32조⁶⁾에 따라 장애인·고령자 등 정보취약

5) 제31조(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)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6) 제32조(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(이하 “정보통신제품”이라 한다)를 설계, 제작, 가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장애인·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

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었음.

- 최근 장애인, 노령자 등으로 분류되는 정보취약계층의 경우, 웹사이트 이용 등 웹접근성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스마트폰 보유율이나 스마트폰 활용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며,
- 정보이용 시설의 확대 및 무료교육과 같은 지속적인 정보화 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정보화 선도 계층과의 정보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.
 - ※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장애인·장노년층·농어민·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관한 ‘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’ 결과에 따르면, 2018년 정보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은 72.6%로 전년(70.1%) 대비 2.5% 상승하였으나 일반국민 인터넷 이용률(91.5%) 대비 18.9% 낮은 수준이고, 정보 취약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71.3%로 전년(68.7%) 대비 2.6% 상승하였으나 일반국민 스마트폰 보유율(91.0%) 대비 19.7% 낮은 수준임.
 - ※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조사팀의 ‘2018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’에 따르면, 스마트폰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인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최근 3개월 이내 이용현황을 연령대로 보면 30대는 87.2%, 40대는 76.2%, 50대는 51%이지만 60대는 18.7%, 70대는 6.3%로 60대 이상에서는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짐을 알 수 있음.
-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웹접근성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접근성까지 포함하는 용어인 ‘정보접근성’으로의 보완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조례개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- 다만, 안 제4조제2항 중 조례 명칭과 기본계획은 그 명칭이 변경('19. 3. 28.) 되었는바, 이에 대한 수정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| 개 정 안 | 수 정 의 견 |
|---|---|
| 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<u>정보화 기본 조례</u> 」 제5조의 서울특별시 <u>정보화기본계획</u> 과 연계되도록 한다. | 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<u>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</u> 」 제5조의 서울특별시 <u>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</u> 과 연계되도록 한다. |

※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도 동 조항에 대해 수정의견을 개진함.

- 또한, 안 제6조제4호의 경우는 동 조례가 일부개정('19.5.16)으로 현행 제6조제4호가 제5호⁷⁾로 이미 개정되었는바, 관련조문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| 개 정 안 | 수 정 의 견 |
|---|--|
| 제6조(추진사업) 1. 3. 생략 4. 그 밖의 정보취약계층의 <u>웹접근성</u>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| 제6조(추진사업) 1. 4. 생략 5. 그 밖의 정보취약계층의 <u>정보접근성</u>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|

7) 제6조(추진사업)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
2.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
3.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 홍보
4.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
 - 가.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
 - 나.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
 - 다.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
5.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2) 위원회 명칭 변경 및 ‘정보접근성’전문가 위원 추가(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)

-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‘웹접근성’이란 용어를 ‘정보접근성’으로 개정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(웹접근성위원회 ⇒ 정보접근성위원회)하려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좀 더 넓은 의미의 ‘정보접근성’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으나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.

※ 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 →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

※ 성명 외의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음(법제처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(제8판)」, 89면 참조).

| 정비 원칙 | 허용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대한v중학교 | 대한중학교 |
| 한국v대학교v사범v대학 |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|

- 안 제8조제2항은 관련조례가 전부개정(「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」 ⇒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)되어⁸⁾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위원회 위원구성 시 정보접근성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.
- ※ 안 제8조제2항에서는 “**정보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된**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로 본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.
- 현재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은 2019년 3월 웹접근성 전문가 1명을 추가 위촉하여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8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위원회를 정보접근성위원회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짐(붙임1).
- ※ '19년 5월 7일자 기준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1명, 위촉직 20명('19. 3월 웹접근성 전문가 추가 위촉포함)으로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※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 제7조제3항⁹⁾에 따르면 스마트도시

8) 서울특별시조례 제7026호, 전부개정·시행 2019. 3. 28.

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학계, 기업, 민간단체,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고,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정책관,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 구성됨.

- 또한, 금번 조례의 개정은 웹접근성 및 정보접근성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| 개 정 안 | 수 정 의 견 |
|--|---|
| <p>제8조(위원회) ① ----- 정보 접근성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</u>-----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<u>정보접근성</u>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p> <p>② ----- <u>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</u>-----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----- <u>스마트도시위원회</u>-----.</p> <p>----- <u>정보접근성</u> 전문가가 포함된 <u>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</u> <u>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</u>-----.</p> | <p>제8조(위원회) ① ----- 정보 접근성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</u>-----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<u>정보접근성</u>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p> <p>② ----- <u>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</u>-----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----- <u>스마트도시위원회</u>-----.</p> <p>----- <u>정보접근성</u> 전문가가 포함된 <u>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</u> <u>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</u>-----.</p> |

9)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 제7조(위원회 설치 등)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한다.

1. 위촉직 위원 : 학계, 기업, 민간단체,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당연직 위원 : 스마트도시정책관,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

- 다만,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참석율('17년 61.6% ⇒ '18년 57.5%)이 저조한바, 참석률 제고를 위한 독려 방안과 함께 효과적인 위원회 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
□ 최근 3년간 스마트도시위원회(舊 정보화전략위원회) 개최 및 참석현황

○ 2019년 : 1회

| 연번 | 개최일자 | 회의안건 | 참석인원(명) | 참석률(%) |
|----|----------|--|---------|--------|
| 계 | 1회 | | 15 | |
| 1 | '19.3.29 | · 2019년도 웹접근성수준향상 시행계획 심의 · 자유토론(디지털재단 발전방향, 기업참여 스마트시티 사업 활성화) | 15/21 | 71.4% |

○ 2018년 : 4회

| 연번 | 개최일자 | 회의안건 | 참석인원(명) | 참석률(%)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------|
| 계 | 4회 | | 57 | |
| 4 | '18.12.21 | · 신규위원 위촉식, ·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보고 | 17 | 70.8% |
| 3 | '18.7.18 | ·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자문 | 11 | 47.8% |
| 2 | '18.4.30 | · 스마트시티 서울 전략 자문 | 12 | 46.2% |
| 1 | '18.3.30 ※전자회의 | · 2017년도 정보화시행계획 심의 · 2017년도 웹접근성수준향상 시행계획 심의 | 17 | 65.3% |

○ 2017년 : 2회

| 연번 | 개최일자 | 회의안건 | 참석인원(명) | 참석률(%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------|
| 계 | 2회 | | 32 | |
| 2 | '17.12.20 ※전자회의 | ·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 신규과제 심의 | 18 | 69.2% |
| 1 | '17.3.29 | · 2017년도 정보화시행계획 심의 · 2017년도 웹접근성수준향상 시행계획 심의 · 서울 디지털 서밋 2017 추진방향 자문 | 14 | 54% |

| | | | |
|------|-----|-------|-----|
| 전문위원 | 김태한 | 입법조사관 | 최문숙 |
|------|-----|-------|-----|

붙임 1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명단(2019. 5. 7.현재)

○ 2019. 5. 7. 현재 21명으로 운영 중

- 당연직(1) : 스마트도시정책관 ※ 재단이사장 공석
- 위촉직(20)

※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19명 승계(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 부칙 제3조~제4조)

※ 3월29일 웹접근성 전문가 1명 추가 위촉(임기 : 19. 3.29. ~ 21. 3. 28)

| 연번 | 성명 | 성별 | 직위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강** | 여 | 교수 | |
| 2 | 공** | 남 | 교수 | |
| 3 | 권** | 남 | 대표 | |
| 4 | 김** | 남 | 교수 | |
| 5 | 김** | 남 | 이사 | |
| 6 | 김** | 남 | 교수 | |
| 7 | 김** | 남 | 시의원 | |
| 8 | 문** | 남 | 교수 | |
| 9 | 박** | 남 | 변호사 | 1회연임 |
| 10 | 성** | 여 | 연구위원 | |
| 11 | 이** | 남 | 시의원 | |
| 12 | 이** (부위원장) | 남 | 센터장 | |
| 13 | 이** (위원장) | 남 | 교수 | |
| 14 | 인* | 남 | 교수 | |
| 15 | 임** | 남 | 교수 | |
| 16 | 장** | 남 | 교수 | |
| 17 | 조** | 여 | 교수 | |
| 18 | 주** | 남 | 본부장 | |
| 19 | 신** | 남 | 본부장 | |
| 20 | 노** | 남 | 교수 | 웹추(현)포, 접가정보접근성포, 근위성포, 위원장 |